

**2023년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

2024. 4.



농림축산식품부
감사담당관실

I. 감사 개요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자체감사계획의 수립·실시) 및 제21조(실지감사)의 규정

☐ 감사목적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의 기관운영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 감사대상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 감사범위

- 최근 3년간('20~'23.7월)의 기관운영, 농산업 인력 육성, 스마트팜 확산, 농식품 정보 제공 등 사업 전반

☐ 감사기간 및 인원

- (1차) 2023. 5. 2. ~ 5. 19. 감사담당관 외 6명
- (2차) 2023. 7. 20. ~ 9. 27. 서기관 외 7명

II. 감사 결과

1	임원추천위원회 개입 및 문서 유출 등 부적정		
처분요구	기관경고, 통보	관계기관	○○○○본부, 감사실

- (임추위 개입)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라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 요구를 하지 않아야 되나,
 - 前 ○○○○본부장은 하급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는 등 「임직원행동강령」 및 위계질서 문란 행위 등 「복무규정」 위반
- (문서 유출) 「공공기록물법」 제19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기록물을 무단으로 손상, 은닉, 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지 않아야 되나,
 - 원장 '결재문서'가 유출되었음에도 즉시 자체 조사를 하지 않고 2023.07.21. 이후 누장 대응하였고, '문서유출 자체 조사위원회'에서 前 ○○○○본부장이 ○○○○실 공용폴더에 접속했던 사실 확인 및 ◇◇총회 시(2023.7.) 비공개 문서인 원장 결재문서를 공개한 사실은 공개과정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문서 입수 경로가 불투명함

농림축산식품부

비공개 문서의 외부 유출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즉시 조사를 하지 않고 누장 대응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게 된 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기관경고” 조치 (기관경고)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본부장의 「임직원행동강령」 및 「복무규정」 위반과 더불어 공용폴더 접속사유 추가조사, ◇◇위원장이 어떤 경로로 '원장 결재문서'를 입수했는지 사실관계 조사 후 「인사규정」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 요구 (통보)

2	인사교류 운영 부적정		
처분요구	경고, 주의(2)	관계기관	경영기획본부, 감사실

- 「인사규정」 제11조의2 및 「파견직원 관리지침」, '2021년 공공기관 간 인사교류 추진계획'에 따라 농정원의 교류 대상자는 교류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 노하우를 습득하는 등 인사교류 취지에 맞게 근무하여야 하나,
 - 교류 대상자가 근무일(34일) 대부분을 교류기관이 아닌 원 소속기관(농정원)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주간업무활동보고서를 작성을 하지 않고, 복무(근태)관리일지는 근무상황 작성 후 교류기관 부서장의 결재 없이 원 소속기관에 제출하는 등 인사교류를 부적정하게 운영
- 「내부감사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업무 집행에 따른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 인사교류가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관련된 기사가 보도된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① 「인사규정」 제11조의2 및 「파견직원 관리지침」에 따라 ‘2021년 공공기관 간 인사교류 추진계획’를 추진하면서 당초 계획과 달리 인사교류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책임자에 대하여 “경고” 조치 요구 (경고)

② ‘2021년 공공기관 간 인사교류 추진계획’과 달리 교류기간 동안 원 소속기관에서 대부분 근무하고 복무일지를 부실하게 작성한 교류 대상자와 복무관리, 업무 인수인계 등 인사교류 실무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 등 관련자(3명)에게 “주의” 조치 요구 (주의)

③ 인사교류가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내부감사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자체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책임자에게 “주의” 조치 요구 (주의)

3	공모방식 지원사업 선정절차 미흡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감사실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공모방식을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 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공고하고, 나라장터에 공지하여야 하며, 공모 개시 5일 이내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를 지켜 수행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나,
- 최근 3년간 공모방식으로 진행된 44개 사업 중 3개 사업(6.8%)이 보조금 시스템에 공고를 하지 않았고, 12개 사업(27.3%)이 나라장터에 공지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4개 사업(9.1%)은 공모 개시 5일 이내에 해야 하는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공모방식을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보조금 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공고 및 나라장터에 공지하도록 조치 요구 (통보)

4	일상감사 운영 미흡		
처분요구	부서주의, 개선	관계기관	감사실

- 「내부감사규칙」 제5조에 따라 일상감사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규정 준수여부 등에 대하여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실시하여야 하나,
- 전자결재 일상감사의 경우 사업부서에서 결재권자 등에 전자결재 상신 시 단순 중간검토자(협조)로 참여하여 별도 내부 검토자료 또는 의견서를 작성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음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① 협조감사를 실시하며 「내부감사규칙」에 따라 “일상감사 중점 사항”에 따른 내부 검토자료나 의견서를 작성하지 않고 결재 중간검토자로 참여하는 식으로 일상감사 업무를 소홀히 한 감사실에 대해 “부서주의” 조치 요구 (부서주의)

② 일정규모 이상의 용역, 공모, 구매계약에 대해 “일상감사 중점 사항”에 따른 검토 및 서면감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 실효성 있는 일상감사가 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요구 (개선)

5	제안서 평가위원회 후보 명부 등재 및 관리 부적정		
처분요구	기관경고, 징계, 주의, 통보(3)	관계기관	□□실

-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계약(협약) 요구부서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추천하고 □□실장이 이를 검증하여 승인한 후 위원 명부에 등재 관리하여야 하나,
 - 자격 미달자 추천 및 확인 미흡으로 선임 연구원, 비전임 교수 등 자격요건 미달 평가위원 등재(9명) 및 평가 참여(10건) 사례 확인됨
 - 재직증명서, 자격증 등 기본적인 증빙자료를 통한 검증 미실시로 위원 등록 신청서, 평가 서약서에 재직기관을 허위 기재한 사례(1건)가 확인됨
- 후보명부 등재·제외시 절차위반 및 추천부서(담당자)를 알 수 없도록 하고, 위원 해촉 시 서면이 아닌 구두로 요청받거나 제외 사유, 일자 등을 명백히 하지 않는 등 미흡하게 관리함

농림축산식품부

제안서 평가위원회 후보 명부 등재를 추진하면서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 자 추천 및 확인 미흡으로 자격 미달 위원이 명부에 등재되고 평가에 참여하게 하고, 평가의 당위성(정당성)을 훼손시키고 경우에 따라 평가 자체를 무효화 할 수도 있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평가위원회에 대해 재직증명서, 자격증 등 기본적인 증빙자료를 통한 검증도 일체 실시하지 않았으며, 위원 해촉 또는 명부 제외 관리를 미흡하게 처리하는 등 제안서 평가위원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 (기관경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① 명부 등재 위원별 자격 기준 충족여부 등을 전면 재조사·검토하여 제안서 평가위원단 후보 명부를 재정비 조치 요구 (통보)

② 제안서 평가위원단 후보 명부에 등재된 평가위원의 등록 신청서, 평가(심사)위원 위촉 확인 및 평가운영지침 준수 각서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고, 미자격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정도에 따라 평가위원 배제 또는 「형법」 제314조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 하는 등 적절한 조치 요구 (통보)

③ 부서 추천 위원에 대한 자격요건 확인을 미흡하게 하고, 평가위원에 대해 재직증명서, 자격증 등 기본적인 증빙자료를 통한 검증도 일체 실시하지 않았으며, 위원해촉 또는 명부 제외 관리를 미흡하게 하는 등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 및 제6조의2를 위반한 □□실장에 대하여 평가위원단 후보명부에 대한 전면 재조사 결과(위반정도, 회수 등) 등을 징계양정에 반영하여 「인사규정」 제32조, 「인사시행규칙」 제43조 [별표3] 제규정 준수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 조치 요구 (징계)

④ 前 □□실장에 대하여는 평가위원 명부 등재시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한 2021.10.27.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지침」 개정 이후 약 2개월 근무기간 동안 검증업무를 하지 않았으나, 검증단계를 추가토록 지침 개정에 기여한 점을 감안하여 “주의” 조치 요구 (주의)

⑤ 최근 3년간(2020.1.~2023.8.) 자격 미달 위원을 평가위원단 후보로 추천한 계약(협약)요구부서 관련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조치 요구 (통보)

6	제안서 평가위원회 선정방식 및 관리 부적정		
처분요구	부서주의, 개선, 통보	관계기관	감사실

-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평가위원회 위원 선정 시 감사실에서 무작위 추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섭 순위를 정하고 순차적으로 참석여부를 확인 후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 무작위 추출 프로그램을 통해 임의적으로 교섭대상을 5~10배수 선정한 후 동시에 일괄 문자를 발송하여 응답 선착순으로 선정
 - 2022년 용역계약을 제안서 평가를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면서, 평가위원 구성을 위한 안내문자를 무작위로 전송하는데도 일부 위원이 전송 후 1분 이내에 응답(최단시간 10초)하는 사례가 있음
 - 제안서 평가에서 신속하게 응답한 위원들이 다른 위원들과 다른 경향(동일 업체에 높은 점수 부여, 경쟁업체에 낮은 점수 부여)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있음
- 평가위원단 후보명부 관리와 평가위원 선정 업무를 감사실 직원 1인이 전담함에 따라 개인 이탈 등에 의한 부정행위 등 평가의 공정성 침해가 우려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내부 통제기능을 갖출 필요성이 있음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①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지침」에서 정한 방식과 다르게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평가 후보단 등재와 위원선정 업무를 소홀히 한 감사실에 대해 “부서주의” 조치 요구 (부서주의)

② 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정 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지침」에 맞게 운영하거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위원 선정 방식 개선 조치 요구 (개선)

③ 평가후보단 등재·관리업무와 위원 선정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방안 마련 요구 (통보)

7	규정관리 미흡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경영기획실

- 「규정관리규정」 제13조에 따라 규정 제정·운용 시 기관의 관리운영 및 업무수행의 적정성·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집 관리 현황을 기록·유지, 추록가제정비 일람표를 관리하여야 하나,
 - 「규정관리규정」 제13조에 따른 규정집 관리 현황을 기록·유지 하고 있지 않음
 - 추록 가제·정비 일람표 등 관련 양식의 경우 규정관리를 위해 필요한지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규정을 개정 필요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효율적인 규정 관리를 통해 기관의 관리운영 및 업무수행의 적정성·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관리규정」 제13조에 따른 규정집 관리 현황을 기록유지 하고, 추록가제·정비 일람표 등 관련 양식의 경우 규정관리를 위해 필요한지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규정 개정 조치 요구 (통보)

8	업무추진비 집행·관리 부적정		
처분요구	기관경고, 통보, 개선	관계기관	경영기획실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은 비수익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고, 사용 관행을

개선하는 등 투명한 사용을 위해 자체 세부 지침을 마련한 후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나,

-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편성된 사업추진비(보조사업 내 업무추진비)를 관서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되는 관서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내 업무추진비) 용도로 사용함
- 대외 협의, 간담회, 공식 행사 등에 사용하도록 명시된 지침과는 달리 관행적으로 내부 직원 간의 업무 회의 등 비용으로 사용함
-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해 자체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개정된 「법인카드관리지침」의 2개 조항에 관련 내용을 명시한 후 어떤 지침도 마련하지 않았음

농림축산식품부

기관운영비에 배정된 업무추진비는 특정 부서에 편중 배정하여 사용하고, 사업부서에서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배정된 사업추진비(보조사업 내 업무추진비)를 원래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나 관서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내 업무추진비) 용도로 대부분 사용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기관경고” 조치 (기관경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① 관서업무추진비를 특정 부서에만 편성하고 사업추진비를 사업부서에서 관서업무추진비처럼 사용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관리·운영한 관련자에 대해 조사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 요구 (통보)
- ② 업무추진비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해 사용범위 및 집행절차, 모니터링 등에 대한 자체 세부 지침 마련 요구 (개선)

9	유연근무 운영 · 관리 부적정		
처분요구	경고, 주의, 통보(2)	관계기관	인사혁신실, 감사실

- 「복무규정」 제3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직원은 법령 · 정관, 규정을 준수하고 창의와 성실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하고, 근태상황은 원칙적으로 업무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나,
- 2020년~2023년 8월까지 한 달 단위로 신청한 유연근무자 중 30회 이상 신청(총 30개월)한 유연근무자(41명, 재직자)를 대상으로 유연근무 근태 미기록 현황을 조사한 결과 41명 대부분이 미기록 사례가 있고, 해당 건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상습적 미기록자가 발생함
 - 유연근무를 신청한 자는 통상의 근무시간 · 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를 하는 만큼 법령 · 정관 및 규정을 더욱 준수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복무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야 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① 유연근무제도를 운영 · 관리하면서 유연근무자에 대한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유연근무 신청자가 출퇴근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국가공무원 복무 · 징계 관련 예규」 및 「복무규정」을 위반한 복무관리자 2명에게 ‘경고’ 조치 (경고)

② 유연근무제도를 운영 · 관리하면서 유연근무자에 대한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한 담당자 3인에 대해 “주의” 조치 요구 (주의)

③ 복무규정에 따라 유연근무를 신청하여 근무하는 자는 일반 근무자와 비교하여 더욱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태 미기록한 유연근무자에 대해 미기록의 횟수, 사유, 기간,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인사시행규칙」 제43조 [별표3] 제규정 준수 및 성실의무 위반 등에 따라 징계, 경고, 주의 등의 처분을 조치 요구 (통보)

④ 2023년 종합감사 시 대상이 되었던 유연근무자 41명 외 유연근무를 실시하였던 직원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유연근무 미기록의 횟수, 사유 등을 고려하여 적의 조치 요구 (통보)

10	농정원 노동조합 단체협약서 이행·관리 소홀		
처분요구	주의, 개선, 통보	관계기관	인사혁신실

- 노동조합 ‘단체협약서’ 제17조(근로시간 면제자)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자가 연중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2 제4항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고시에 따르고, 파트타임은 2명으로 하되 조합은 근로시간 면제자를 농정원에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하며, 근로시간 면제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사전에 농정원과 협의한 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나,
 - 노동조합은 2022.07.11., 2023.03.13. 자로 ◇◇위원장의 근무부서가 변경되었고, 2022.01.01. 자로 ◎◎위원이 변경 되었음에도 근로시간 면제자를 변경 통보를 하지 않았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및 ‘단체협약서’ 제17조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관리하여야 하나,
 - 근로시간 면제자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① 노사 합의한 '단체협약서' 제17조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자의 변경 통보를 하지 않은 ◇◇위원장 및 ◎◎위원에게 “주의” 조치 요구 (주의)

②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초과 여부 확인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및 단체협약 사항의 이행에 관한 확인시스템을 노사간 협의를 통해 마련 요구 (개선)

③ 근로시간 면제자(2명) 대상으로 최근 3년(2020년~2022년) 동안 근로시간 면제 및 근태 상황을 확인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단체협약서' 제6조에 따라 조치 요구 (통보)

11	징계양정 일반기준 미흡		
처분요구	개선	관계기관	인사혁신실

○ '공공분야 갑질근절을 위한 가이드 라인'(2019. 2월, 관계부처 합동) 및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농정원은 공공기관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나,

-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43조에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징계양정을 규정하고 있으나, 직장 외에 업무 관련자 등에 대한 농정원 직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는 징계양정 일반기준에 없음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 등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장 외 업무
관련자(민원인, 계약 업체 등)에게 농정원 직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에 대해 징계양정 일반기준 마련 조치 요구 (개선)

12	겸직허가 및 겸직 부적정		
처분요구	경고, 주의	관계기관	인사혁신실

-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라
상위규정 및 관련 지침을 준용하여 자체 겸직허가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겸직허가 시 영리행위 여부와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 2020~2022년까지 인사부서 담당자는 겸직 허가와 관련한 내부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2022년 10월까지 운영하였으며, 자체 규정인 「복무규
정」 제7조에 허가 사항을 승인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위임전
결규칙」에 따라 대외출장 및 겸임교수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자 본인이 원장 결재 받은 것으로 겸직 허가를 갈음함
-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37조 제2항에 따라 겸직을 하는 경우
영리행위 여부와 담당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
토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규정한 절차대
로 겸직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나,
- 2020~2022년간 겸직허가 신청자(2명)는 인사부서 안내에 따라 대외출
장 및 겸임교수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자 본인이 원장 결재를
받는 형식으로 겸직 허가를 갈음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① 관행적으로 상위 규정에 대한 검토 없이 ‘대외출장 및 겸임교수 승인 신청’을 신청자 본인이 원장의 결재를 받아 공람하는 것으로 제도를 운영해 온 관리자 및 담당자 4명에 대하여 “경고” 조치 요구 (경고)

② 겸임교수 출강의 경우 겸직에 해당됨에 따라 인사부서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자체 복무규정보다 상위규정인 「공공기관운영에 관한법률」 제37조 제2항에 따라 영리행위 여부와 담당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규정한 절차대로 겸직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신청자 2명에 대하여 “주의” 조치 요구 (주의)

13	직원 채용 운영 · 관리 부적정		
처분요구	부서주의, 개선	관계기관	인사혁신실

-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9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임직원의 임면, 승진, 전보 등 임직원의 인사를 법령, 정관, 자체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나,
 -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시 학력의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불필요한 증명서류를 요구하였음
 - 채용 서류 전형 심사 채점표에 서류 전형으로는 알기 어려운 문제 해결능력과 의사소통능력에 각 20점 배정하는 등 부적정한 항목을 심사항목으로 채택하였음

- 채용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하나 필기전형 총점 고득점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한다고 내부 지침에 명시하였음
- 채용 등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지침 및 가이드 북의 내용을 내부 지침에 반영하지 않았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① 공정한 채용 절차 진행을 위하여 마련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공공기관 공정 채용 가이드 북’ 등의 내용을 자체 지침에 미반영한 인사혁신실에 대해 “부서주의” 조치 요구 (부서주의)

② 채용 과정 및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용 절차를 개선하고 「채용규칙」을 상위 지침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정 조치 요구 (개선)

14	성희롱 예방교육 운영 미흡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인사혁신실

- 「성희롱 예방지침」에 따라 성희롱 예방교육의 계획을 교육실시 전년도에 수립하고 매년 최소 1회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성희롱 예방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나,

- 성희롱 예방교육을 대면 또는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지 않았으며, 최근 3년간(2020~2022년) 신규 임용된 사람 총 108명 중 69명(63.9%)에 대해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소홀히 함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성희롱 예방지침」에 따라 매년 최소 1회 대면교육을 실시하고,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성희롱 예방 교육이 지침에 맞게 실시될 수 있도록 운영 방안 마련 요구 (통보)

15	인사관리(경력 평정) 부적정		
처분요구	개선, 통보	관계기관	인사혁신실

- 육아휴직의 경력평정시 승진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육아휴직자 경력평정 산정기준을 「인사규정 시행규칙」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 「복무규정」 제28조 제4항의 퇴직금 산출시 근속기간 포함과 기본연봉 인상을 반영에 관한 불명확한 규정을 적용하여 근무년수에 1년을 산입하여 경력평정을 하고 있음
- 「복무규정」 제28조 제4항에 따라 경력평정 시 육아휴직의 경우 근무년수에 1년은 경력으로 산입하여야 하나,
- 육아 휴직자(육아휴직 22개월 '19.3.27 ~'21.1.31)의 경력평정을 하면서 육아휴직 기간인 22개월을 모두 제외하여 경력평정을 부적정하게 함
- * 육아휴직 1년 10개월인 경우 1년 경력 포함, 10개월 경력 제외가 적정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① 승진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육아휴직 경력평정 산정기준을 「인사규정 시행규칙」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운영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조치 요구 (개선)

②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경력 평정시 담당자, 책임자 등이 교차로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경력평정이 부적정하게 산출되지 않도록 조치 요구 (통보)

16	출장여비 규정 및 복무관리 미흡		
처분요구	통보(2)	관계기관	인사혁신실, 재무관리실

- 「여비규정」에 따라 임직원의 업무 출장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경우 임직원별로 운임을 차등 지급하고, 국외여비 숙박비를 할인정액 지급 시 여비 조정을 하지 않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나,
 - 철도 및 선박 운임을 임직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직원들도 KTX 특실을 이용하고 있으며, 국외여비의 숙박비를 할인정액으로 지급하면서 여비 조정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임원과 동행 출장 시 직원도 임원과 동일한 여비(숙박비·식비)를 받고 있음
- 「복무규정」에 따라 부서장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직원은 출장종료 후 사무실로 복귀하는 등 직무수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나,
 - 출장종료 후 사무실 복귀 여부를 내부메일 확인, 문서 결재 시간 등으로 확인한 결과 사무실 복귀 여부가 불명확 하는 등 출장자의 철저한 복무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2023. 4월(04.10.~04.14.) 직원 출퇴근 : 637명 중 37명(5.8%) 출퇴근 시간 미확인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① 임직원의 업무 출장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경우 임직원별로 운임을 차등 지급하고, 국외여비의 숙박비를 할인정액으로 지급 시 여비 조정을 하지 않도록 「여비규정」을 개정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요구 (통보)

② 업무로 출장을 가는 직원에게 출장종료 후 사무실로 복귀하도록 하고, 스피트게이트의 게이트 열림 버튼 이용을 제한하는 등 직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요구 (통보)

17	계약업무 처리 미흡		
처분요구	통보(2)	관계기관	재무관리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에 따라 계약은 일반경쟁이 원칙이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계약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여야 하나,

- 내부 수의계약 규정에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 규정

* 이미 구축한 대상물 하자책임 곤란시 기존 업체와 계약, 특정 기술, 자격 요구사항에 '시설관리' 추가, (사)유니세프한국위원회 생산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구매계약규칙」에 따라 과업변경, 기간연장 등 계약사업 변경 시 필요할 경우 과업변경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는 중대한 변경사항 등 관련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아 사안의 경중과 무관하게 사업 담당 부서별 자의적으로 심의회 개최여부를 결정하고 위원회 구성도 제각각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① 내부 규정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를 국가계약 법령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조치 요구 (통보)

②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는 중대한 계약변경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사업 담당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계약변경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요구 (통보)

18	상품권 구매·사용·관리 미흡		
처분요구	개선	관계기관	재무관리실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2013.09.23.)에 따라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상품권 구매 및 사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나,

- 사업 추진 시 경품으로 배부하는 상품권 및 기프트콘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상품권 구매·배부에 대한 점검 및 홈페이지 공개 등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상품권 사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구매 및 배부 대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등 체계적이고 투명한 상품권 관리 방안 마련 요구 (개선)

19	법인카드 운영·관리 미흡		
처분요구	개선	관계기관	재무관리실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각종 경상경비 지출은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고, 경상경비 예산을 집행할 때 예산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농정원 예산편성지침’, 「법인카드관리지침」에 따라 법인카드를 운영·관리해야 하나,
- 2018.12.26. 카드지침을 개정한 이후 일부 조항의 내용에 오류가 있고, 현재 운영·관리하고 있는 내용과 지침의 조항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침 개정을 하지 않았음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예산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법인카드관리지침」을 상위 법령 및 지침, 현행 운영 체계에 맞게 개선 요구 (개선)

20	사내 카페(연서로스터즈) 임대절차 부적정		
처분요구	부서주의, 통보	관계기관	안전관리실, 인사혁신실

- 2021. 6월 청사건물 일부를 노조에 무상 임대 및 카페 입점 후 1년 2개월 경과 후 2022. 8월 이사회에서 청사건물을 기본재산으로 편입 의결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정관」에 따라 기본재산을 임대코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 및 장관 승인을 거쳐야 하고, 비록 뒤늦게 청사건물이 기본재산으로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 청사건물이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이후 이사회를 5차례 개최하였음에도 카페임대와 관련한 의결 및 장관 승인절차 미이행
- 한편 공공기관이 직원복지 후생 목적의 청사 내 카페시설을 노조에게 무상임대하고 노조가 카페 운영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담당하고 있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①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정관」에 따라 기본재산의 임대 시에는 이사회 의결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사내 카페임대와 관련한 이사회 의결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본재산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안전관리실에 “부서주의” 조치 요구 (부서주의)

② 카페개설을 위해 청사 일부를 노동조합에게 무상 임대한 것에 대하여 법률자문 등을 통해 적법 여부를 확인하고 원상 회복 등 적절한 조치 요구 (통보)

21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위반자 교육 운영 미흡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인재기획실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시행지침」에 따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자 대상으로 재위반 방지를 통한 식생활 안전 확보 등 교육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집합교육 및 온라인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있으나, 온라인교육은 본인 이외의 사람이 로그인을 통해 이수할 수 있으며, 대리도 수업을 듣거나 교육 화면을 띄워 놓고 다른 작업을 수행하는 등 형식적인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질 소지가 있음

* 2022년 원산지 교육 실적 : 2,047명(집합교육 67, 온라인교육 1,980)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원산지 표시제도 위반자 대상으로 온라인교육을 실시할 경우 대상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비대면 실시간 교육 등 실효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요구 (통보)

22	농식품 사업 안내 미흡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디지털농정실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하고, 정보 불평등을 해소하고 정보취약자의 접근과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나,
- 농식품사업에 대해 일선 농업인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자체·유관기관 홈페이지 배너 홍보, SNS 홍보, 사업지침서·안내서 책자 배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매년 주요 농식품사업 지원 대상 농업인에 대해 사업 신청기간, '농식품 사업안내서비스' 주소 등을 휴대전화 메시지 발송으로 정례화하고, 사업 별로 관심 있는 사람에게 사업정보(공고, 신청기간, 신청 마감임박 알림 등)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 을 지원하는 등 방안 마련 요구 (통보)

23	도시농업 교육인력양성사업 정산 미흡		
처분요구	부서주의	관계기관	도농상생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업 수행기관에서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 보조사업에 든 경비, 절차 준수 등에 대한 정산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
- 사업계획서의 수료기준(출석+실기과제+평가지험+발표)과 다르게 실적 보고서(출석+실기과제)를 제출하였고, 강사비를 실제 교육한 일자와 다른 일자를 기준으로 지급(8회)하였으며, 출석부를 교육생 본인이 서명하지 않고 강사가 일괄 서명하는 등 정산업무를 철저히 하지 않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도시농업 교육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계획서와 다른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강사비를 실제 교육한 일자와 다른 일자 기준으로 지급하며, 출석부를 강사가 일괄 서명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산업무를 소홀히 한 도농상생실에 “부서주의” 조치 요구 (부서주의)